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관리 방안

유해미 연구위원

민간 육아도우미는 영유아 자녀의 경우 너무 어려 기관이용을 원치 않아서, 초등자녀의 경우 방과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육아도우미는 지인 및 친인척을 통해 구하고, 신분증 등만을 확인하여 채용하는 실정이므로, 범죄경력 조회 등 신원보장에 대한 부모들의 요구가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영유아를 둔 부모의 가정내보육에 대한 선택권 보장과 초등자녀의 방과후 돌봄 공백 해소의 측면에서 일차적으로 민간 육아도우미에게 신원확인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아이돌봄지원사업의 발전 방향과 이외 양육지원제도 개편 등에 따른 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민간 소개업체 및 정보제공업체의 인증과 교육지원 등 자격관리 강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고려할 만하다.

1. 들어가며

정부가 가정내 양육지원을 위해 2007년부터 제공해온 아이돌봄서비스는 올해부터 정부지원 대상이 중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되어 연간 9만 가구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¹⁾ 그러나 아이돌봄지원사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미스매칭 등으로 인한 대기 문제를 온전히 해소하기 어려우므로 가정 내에서 자녀를 보육하려는 부모들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들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은 미흡하여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발생 위험마저도 내포하고 있다. 민간 소개업체 및 정보제공업체의 등록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는 범죄경력 조회

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이용 부모는 범죄경력 등 기본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소기준의 표준화된 교육체계도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간 정부는 가정내 양육지원의 핵심과제로서 아이돌봄지원사업의 확대와 더불어 민간 육아도우미 관리 방안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다.²⁾ 특히 올해 2월에 발표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정판”에서는 가정내 돌봄지원을 위해 아이돌보미 자격 및 이력과 통합하여 민간 육아도우미 시장의 질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³⁾ 그러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채용은 전적으로 개별가구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이용 가구에 대한 정부의 비용지원도 부재한 상황이므로 이들에 대한

1) 여성가족부(2018). 보도자료: 2019년 여성가족부 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 확정: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과 여성안전 강화에 중점(2018. 12. 8).

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18).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추진 방안. p. 10.

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2019).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정). p. 21.

지도·감독의 수준은 공적으로 제공되는 아이돌봄지원사업과의 관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적정 개입의 수준은 일차적으로 부모 수요에 기반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의 서비스 이용 동기 및 실태와 개선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 육아도우미 자격관리의 기본 방향 및 세부 방안을 제시하였다.

2.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⁴⁾

이하는 전국지역의 영유아 및 초등자녀를 둔 가구로서, 2018년 기준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 중이거나 3개월 이전까지 이용하였고, 해당 이용기간이 1개월을 경과한 총 5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조사응답자는 영아 자녀 53.6%, 유아 자녀 37.0%, 초등 자녀를 둔 가구가 9.4%이고, 맞벌이 가구가 87.8%를 차지한다.

〈표 1〉 설문조사 대상자 일반적 특징

		단위 : %(명), 명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지역규모		월가구소득	
대도시	85.0(425)	300만원 이하	7.0(35)
중소도시	14.0(70)	500만원 이하	38.0(190)
읍·면지역	1.0(5)	700만원 이하	29.4(147)
		900만원 이하	15.6(78)
		900만원 초과	10.0(50)
		평균(만원)	653.70
응답자 성별		자녀연령	
남성	35.8(179)	영아	53.6(268)
여성	64.2(321)	유아	37.0(185)
연령		초등자녀 이상	9.4(47)
20~29세	5.8(29)	자녀수	
30~34세	26.2(131)	1명	55.2(276)
35~39세	50.0(250)	2명	40.0(200)
40세 이상	18.0(90)	3명	4.6(23)
최종학력		5명	0.2(1)
고졸 이하	2.2(11)	평균(명)	1.50
전문(3년제)대학 졸	9.4(47)	맞벌이 여부	
4년제 대학 이상	72.4(362)	맞벌이가구	87.8(439)
대학원 이상	16.0(80)	홀벌이가구	12.2(61)
계(수)		100.0(500)	

4) 이하 내용은 육아정책연구소의 2018년 기본과제로 김아름·유해미·윤지연이 수행한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임.

가. 서비스 이용 동기 및 구인 경로

1) 서비스 이용 동기

민간 육아도우미의 이용 동기는 자녀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영유아 자녀의 경우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기에는 너무 어려서’가 1순위와 1, 2순위를 합하여 각각 41.9%와 48.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원

하는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할 수 없어서’가 각각 14.3%, 35.8%로 조사되었다(표 2 참조). 초등자녀의 경우는 ‘초등 방과후 돌봄기관에 들어갈 수 없어서’가 각각 38.3%(1순위)와 46.8%(1+2순위)였다(표 3 참조).

2) 구인 경로 및 고려사항

현재 이용 중인 민간 육아도우미의 구인 경로는

〈표 2〉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동기_영유아 자녀

단위 : %(명)

구분	1순위	1+2순위
아이를 기관(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기에 너무 어려서	41.9	48.8
원하는 기관(어린이집/유치원)에 들어갈 수 없어서	14.3	35.8
기관 하원 시에 돌봄 공백이 발생해서	7.9	18.1
아이가 기관(어린이집/유치원)에 적응하지 못해서	6.6	13.9
추가자녀의 출산으로 돌보기 힘들어서	6.6	13.9
기관에 보내는 것보다 가정에서 돌보는 것을 더 선호해서	6.6	23.2
기관(어린이집/유치원)을 신뢰하지 못해서	5.7	16.8
기관 등원 시에 돌봄 공백이 발생해서	5.3	10.4
(공공)아이돌보미를 신청하였으나, 대기가 너무 길어서	4.9	19.0
기타	-	0.2
계(수)	100.0(453)	(453)

자료: 김아름·유해미·윤지연(2018).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35.

〈표 3〉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동기_초등자녀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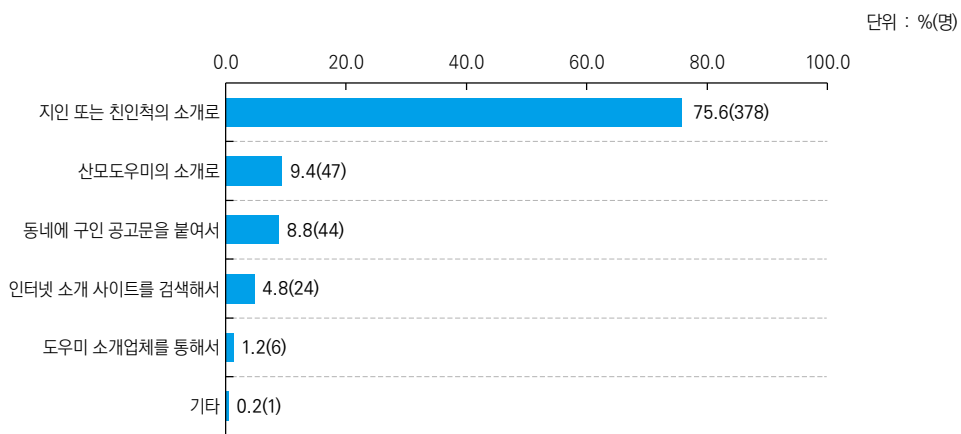
구분	1순위	1+2순위
초등 방과후 돌봄기관(초등돌봄교실 등)에 들어갈 수 없어서	38.3	46.8
하교 시에 자녀 돌봄 공백이 발생해서	27.7	44.7
초등 방과후 돌봄 기관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12.8	38.3
(공공)아이돌보미를 신청하였으나, 대기가 너무 길어서	8.5	21.3
등교 시에 자녀 돌봄 공백이 발생해서	8.5	25.5
추가자녀의 출산으로 돌보기 힘들어서	4.3	19.1
기타	-	4.3
계(수)	100.0(47)	(47)

자료: 김아름·유해미·윤지연(2018).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36.

지인 또는 친인척의 소개가 75.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이외에 산모도우미의 소개가 9.4%, 동네에 구인 광고문을 붙여서 8.8%였다. 소개 및 정보제공업체를 통한 구인 즉 인터넷 소개 사이트는 4.8%, 도우미 소개업체는 1.2%에 그쳤다.

현재 이용 중인 민간 육아도우미의 구인 시의

고려사항으로는 신원 보장(범죄 경력 등)이 1순위 기준으로 40.8%로 가장 주요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육아도우미 경력이 35.4%로 조사되었다. 또한 채용 과정에서 이들에게 요구한 서류는 주민등록증본 또는 신분증, 이력서가 각각 77.6%와 62.4%로 주를 이루었다.



자료: 김아름·유해미·윤지연(2018).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37.

[그림 1] 현재 이용 중인 민간 육아도우미의 구인 경로

〈표 4〉 민간 육아도우미의 구인 시 고려사항

단위 : %(명)

구분	1순위	1+2순위
신원 보장(범죄 경력 등)	40.8	52.8
육아도우미 경력	35.4	64.8
학력 수준	6.8	15.0
건강 상태(질병 여부 등)	5.2	19.8
서비스 이용시간	3.6	10.0
연령	3.4	13.8
공인 자격증(교사, 아이돌보미 등) 여부	3.2	15.6
서비스 제공 내용(학습지도 여부 등)	1.2	7.2
기타	0.4	1.0
계(수)	100.0(500)	(500)

주: 기타는 '인성' 4명, '이전 사용자의 평가' 1명임.

자료: 김아름·유해미·윤지연(2018).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42.

나. 서비스 이용 실태 및 만족도

1) 서비스 이용시간과 이용비용

평일 기준으로 민간 육아도우미 총 이용시간은 평균 7시간 16분으로 2015년 전국보육실태 조사의 평균 어린이집 이용시간 7시간 20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⁵⁾ 그러나 민간 육아도우미

〈표 5〉 민간 육아도우미 평일 근무시간/총 이용시간

단위 : 시, 분(명)

구분	1회차			2회차			3회차		
	출근	퇴근	(수)	출근	퇴근	(수)	출근	퇴근	(수)
전체	9:17	15:56	(500)	15:26	18:18	(101)	17:57	19:27	(9)
자녀연령									
영아	8:47	15:56	(268)	15:15	18:16	(43)	18:54	20:36	(5)
유아	9:39	16:01	(185)	15:28	18:10	(44)	16:10	17:10	(3)
초등자녀 이상	10:37	15:39	(47)	15:56	18:47	(14)	18:30	20:30	(1)
맞벌이여부									
맞벌이가구	9:16	15:57	(439)	15:32	18:21	(91)	17:49	19:08	(8)
홀벌이가구	9:21	15:51	(61)	14:39	17:48	(10)	19:00	22:00	(1)
월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9:41	16:12	(35)	15:38	17:53	(4)	-	-	-
500만원 이하	9:23	15:55	(190)	15:57	18:32	(36)	17:30	19:00	(2)
700만원 이하	9:11	16:11	(147)	15:06	18:06	(27)	18:42	20:12	(5)
900만원 이하	9:08	15:34	(78)	15:06	17:54	(20)	16:30	18:00	(2)
900만원 초과	9:02	15:38	(50)	15:15	18:45	(14)	-	-	-

자료: 김아름·유해미·윤지연(2018).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52.

〈표 6〉 민간 육아도우미 평일 총 이용시간

단위 : 시, 분(명)

구분	1회차		2회차		3회차		합산	
	시간	(수)	시간	(수)	시간	(수)	시간	(수)
전체	6:40	(500)	2:51	(101)	1:30	(9)	7:16	(500)
자녀연령								
영아	7:09	(268)	3:01	(43)	1:42	(5)	7:40	(268)
유아	6:22	(185)	2:42	(44)	1:00	(3)	7:01	(185)
초등자녀 이상	5:02	(47)	2:51	(14)	2:00	(1)	5:56	(47)
맞벌이여부								
맞벌이가구	6:41	(439)	2:49	(91)	1:19	(8)	7:18	(439)
홀벌이가구	6:30	(61)	3:09	(10)	3:00	(1)	7:03	(61)
월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6:31	(35)	2:15	(4)	-	-	6:46	(35)
500만원 이하	6:32	(190)	2:35	(36)	1:30	(2)	7:02	(190)
700만원 이하	7:00	(147)	3:00	(27)	1:30	(5)	7:36	(147)
900만원 이하	6:26	(78)	2:48	(20)	1:30	(2)	7:12	(78)
900만원 초과	6:36	(50)	3:30	(14)	-	-	7:35	(50)

자료: 김아름·유해미·윤지연(2018).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53.

5) 김은설·유해미·최은영·최효미·배운진·양미선·김정민(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130.

의 이용 회차⁶⁾에 따른 근무시간을 살펴보면, 2회와 3회차에 걸쳐 각각 오후 6시 18분과 오후 7시 27분으로 근무시간에 맞추어 이용되는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영아자녀는 전 회차에 걸쳐 오전 8시 47분부터 오후 8시 36분까지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총 이용시간이 7시간 40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난다(표 5, 6 참조).

민간 육아도우미 월 이용비용은 평균 약 109만원이고 150만원을 초과하는 비율이 22.8%으로 조사되었다. 가구특성별로는 초등자녀에 비해 영유아 자녀, 홀벌이 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의 이용비용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표 7 참조). 또한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조사비, 명절보너스, 보너스는 각각 평균 약 123,000원,

〈표 7〉 민간 육아도우미 월평균 이용비용

단위 : %(명), 만원

구분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50만원 이하	150만원 초과	계(수)	평균 (만원)	최소값 (만원)	최대값 (만원)
전체	25.8	34.0	17.4	22.8	100.0(500)	109.17	1	400
자녀연령								
영아	27.6	30.6	17.9	23.9	100.0(268)	109.58	1	400
유아	21.1	37.8	17.8	23.2	100.0(185)	113.97	7	400
초등자녀 이상	34.0	38.3	12.8	14.9	100.0(47)	87.98	10	220
F						2.768		
맞벌이여부								
맞벌이가구	25.5	33.7	17.3	23.5	100.0(439)	110.23	3	400
홀벌이가구	27.9	36.1	18.0	18.0	100.0(61)	101.56	1	300
t						0.933		
지역규모								
대도시	23.8	32.7	18.6	24.9	100.0(425)	113.61	3	400
중소도시	35.7	41.4	11.4	11.4	100.0(70)	86.74	1	250
읍·면지역	60.0	40.0	0.0	0.0	100.0(5)	46.00	10	80
F						13.430**		
월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42.9	31.4	11.4	14.3	100.0(35)	86.71	10	200
500만원 이하	32.6	41.6	12.1	13.7	100.0(190)	89.65	1	300
700만원 이하	21.1	34.0	21.1	23.8	100.0(147)	110.97	10	250
900만원 이하	12.8	30.8	24.4	32.1	100.0(78)	134.22	7	350
900만원 초과	22.0	12.0	20.0	46.0	100.0(50)	154.72	11	400
F						11.245***		
돌봄 자녀수								
1명	29.1	36.0	16.3	18.7	100.0(406)	101.78	1	400
2명	11.1	26.7	22.2	40.0	100.0(90)	140.70	10	400
3명 이상	25.0	0.0	25.0	50.0	100.0(4)	150.00	50	200
F						13.434***		

자료: 김아름·유해미·윤지연(2018).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58.

** $p < .01$, *** $p < .001$.

6) 평일 기준으로 출근횟수는 평균 1.22회로 나타나므로 회차별 근무시간을 조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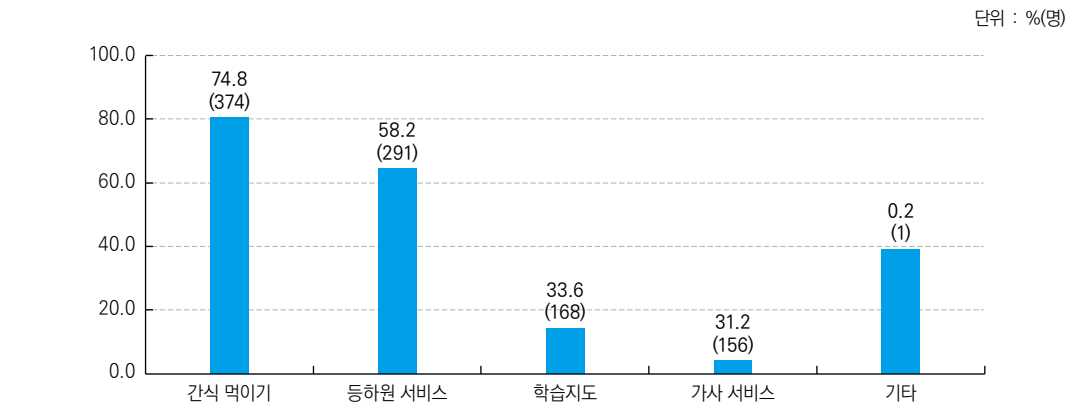
246,000원, 172,000원이었다. 매월 1회 지급이 주를 이루는 교통비(약 59.1%)는 평균 약 142,000원, 식비(62.5%)는 약 134,000원으로 나타난다. 휴가비는 주로 연간 1회 지급되며 평균 약 4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2) 서비스 내용과 만족도

민간 육아도우미가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간식 먹이기와 등하원서비스가 각각 74.8%와 5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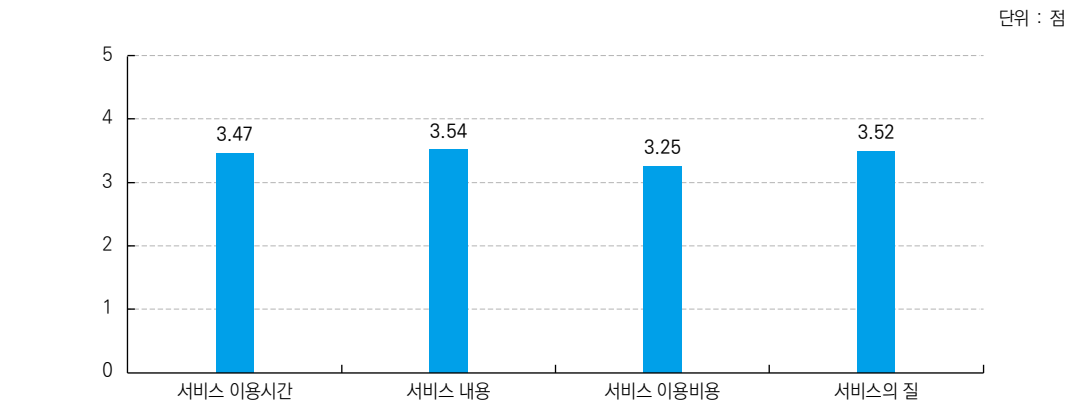
로 대부분이었고, 이외에 학습지도 33.6%, 가사 서비스 31.2% 순으로 조사되어 현행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된다(그림 2 참조).

민간 육아도우미의 이용 만족도는 5점 척도 평균 기준으로 서비스 내용 3.54점, 서비스 질 3.52점, 서비스 이용시간 3.47점 순이었으며, 서비스 이용비용이 3.25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자료: 김아름·유해미·윤지연(2018).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66.

[그림 2] 민간 육아도우미 서비스 내용(중복응답)



주: 평균은 '매우 불만족함' 1점 - '매우 만족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김아름·유해미·윤지연(2018).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81.

[그림 3]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만족도

3) 서비스 병행이용 및 사유

부모를 제외하고 민간 육아도우미를 단독으로 이용하는 비율은 23.0%에 그쳤으며, 병행이용 중인 기관 또는 인력으로는 어린이집이 31.7%로 가장 많고,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28.6%를 차지하였다(표 8 참조).

어린이집과의 병행이용 사유로는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이 근로시간보다 짧거나(49.8%), 기관에 아이를 오래두고 싶지 않아서(34.1%)로 파악된다. 그런데 이때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근로시간보다 짧아서 민간 육아도우미를 병행하여 이용하는 응답자가 보육이 필요한 시간만큼 기관을 이용하게 된다고 해도 민간 육아도우미를 계속해서 이용할 의향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0.7%로 조사되었다. 이는 종일제 기관보육의 내실화가 가정내 양육지원서비스 수요를 온전히 대체하지 못함을 말해준다.

다. 개선 요구 및 이용 의향

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및 미이용 사유

민간 육아도우미 관리의 국가 개입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공적으로 제공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인지 및 이용 경험 및 만족도, 그리고 해당 수요 전반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였다.

현재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대략적으로 알거나 잘 알고 있는 경우가 각각 43.6%와 6.2%에 그쳤으며, 특히 맞벌이 가구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11.4%로 조사되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를 과거에 이용하였거나 현재 이용 중인 가구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만족 + 매우만족)이 55.8%(평균 3.53점, 5점 만점)로 나타났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가 이용비용이 저렴하고 안전하고 믿을

〈표 8〉 민간 육아도우미 이외 서비스 병행이용 기관 및 인력

단위 : %(명)

구분	어린이집 이용중	조부모 또는 친인척	추가로 돌보는 사람이나 기관없음	유치원 이용중	초등돌봄 교실/방과 후학교	지역 아동 센터	이웃 주민	기타	계(수)
전체	31.7	28.6	23.0	5.9	4.6	4.3	1.5	0.4	100.0(461)
자녀연령									
영아	39.2	30.6	24.6	0.0	0.0	4.3	1.3	0.0	100.0(232)
유아	30.2	30.8	19.8	14.8	0.0	3.3	0.5	0.5	100.0(182)
초등자녀이상	0.0	10.6	27.7	0.0	44.7	8.5	6.4	2.1	100.0(47)
맞벌이여부									
맞벌이가구	32.6	27.9	23.0	6.4	4.4	3.5	1.7	0.5	100.0(405)
홀벌이가구	25.0	33.9	23.2	1.8	5.4	10.7	0.0	0.0	100.0(56)
월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41.4	20.7	27.6	3.4	0.0	6.9	0.0	0.0	100.0(29)
500만원 이하	30.2	28.6	25.3	3.8	5.5	5.5	1.1	0.0	100.0(182)
700만원 이하	36.5	29.2	20.4	3.6	5.1	3.6	1.5	0.0	100.0(137)
900만원 이하	28.4	27.0	23.0	10.8	2.7	4.1	2.7	1.4	100.0(74)
900만원 초과	20.5	35.9	17.9	15.4	5.1	0.0	2.6	2.6	100.0(39)

자료: 김아름·유해미·윤지연(2018).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67.

수 있다는 점을 언급되었다. 반면에 아이돌봄서비스에 불만족한 점으로는 아이돌보미의 불친절, 전문성 부족, 긴 대기시간, 이용시간 제약 등을 들고 있다.

과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만족하였으나 현재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이유로는 이용시간의 제약이 없고, 이용 시에 편리하며, 돌보미가 전문적이고 경력이 많고,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며,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2) 개선 요구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으로는 비용 지원, 즉 육아도우미 이용비용 세제지원의 도움 정도가 5점 척도 기준으로 평균 3.84점으로 나타난다.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을 제외하고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은 육아도우미 교육 실시, 직업소개업체 인증제도,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이 각각 62.8%, 55.8%, 58%였다(표 9 참조).

〈표 9〉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시 정부지원의 도움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도움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됨	매우 도움됨	계(수)	평균 (점)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2.2(11)	5.2(26)	34.6(173)	49.2(246)	8.8(44)	100.0(500)	3.57
직업소개업체 인증제도	1.8(9)	6.2(31)	36.2(181)	40.8(204)	15.0(75)	100.0(500)	3.61
육아도우미 교육 실시	1.8(9)	3.0(15)	32.4(162)	45.0(225)	17.8(89)	100.0(500)	3.74
육아도우미 이용비용 세제지원	1.0(5)	4.2(21)	28.0(140)	43.0(215)	23.8(119)	100.0(500)	3.84

주: 평균은 '전혀 도움안됨'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김아름·유해미·윤지연(2018).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87.

〈표 10〉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시 추가지원 요구

단위 : %(명)

구분	(수)	구분	(수)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190)	도우미 자격조건 완화	(3)
육아도우미 자질 보장	(34)	다자녀 육아도우미 지원비용 확충	(2)
공보육시설 확충	(20)	도우미의 아동학대 시 처벌 방안 마련	(2)
국가 육아도우미 서비스 확대	(18)	육아도우미 홍보 확대	(2)
정부의 추가지원	(18)	국가 시터 등록제	(1)
육아도우미 신원인증	(17)	도우미 관련 앱서비스 개발	(1)
충분한 도우미 인력 공급	(16)	도우미 기준 보수 책정	(1)
직장 보육제도 지원	(13)	무료 돌봄서비스	(1)
근로시간 확충	(12)	아기 교육 도우미	(1)
육아도우미 교육 실시	(11)	육아지원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지원 사업	(1)
도우미의 복리후생 보장	(7)	육아관련 전문 기관 운영	(1)
도우미 정기적인 건강검진	(5)	타국적 시터 도입	(1)
도우미 4대보험 보장	(4)	파트타임 도우미, 어린이집 등하원 도우미	(1)
안정적인 도우미 서비스 구축	(4)		
육아도우미 긴급지원 서비스	(4)		
(수)	(368)		

자료: 김아름·유해미·윤지연(2018).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92.

〈표 11〉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을 위한 국가 관리 필요사항

단위 : %(명)

구분	(수)	구분	(수)
도우미 경력/신원 검증	(107)	도우미 교육 관리/지원	(16)
국가의 재정 지원 확대	(97)	자녀의 안전장치 확보/마련	(16)
도우미 자격증 의무화/법제화	(54)	복리후생 지원	(9)
도우미의 교육 관리/지원	(40)	서비스의 질 향상	(6)
도우미 인력 관리/공급	(36)	CCTV 설치	(5)
국가의 도우미 시스템 구축/관리	(31)	도우미의 신뢰성 보장	(5)
도우미 이용시간대 조절/확보	(18)		
(수)		(360)	

자료: 김아름·유해미·윤지연(2018),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93.

이상의 제도 이외에 추가적인 요구되는 정부 지원으로는 재정지원 요구가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육아도우미의 자질 보장, 공보육시설 확충, 국가 육아도우미 서비스 확대, 정부의 추가지원, 육아도우미 신원인증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즉 비용지원을 제외하면 기관보육과 가정내양육서비스 모두에서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는 자질과 신원을 보장하는 방안이 일차적으로 요구됨을 알 수 있다(표 10 참조).

이와 유사하게 민간 육아도우미에게 자녀를 믿고 맡기기 위해 국가의 관리가 필요한 사항으로는 도우미 경력 및 신원 검증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고, 재정지원 확대다음으로 자격증 의무화와 교육 강화에 대한 요구가 그 뒤를 이었다(표 11 참조).

3. 민간 육아도우미 자격관리의 방향 및 과제

가. 자격관리의 기본 방향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양육공백에 따른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해 1:1 개별보육을 선호하는 취업부모에게 가정 내 2세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지닌다.⁷⁾

동 사업의 취지를 감안하면,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국가 자격관리의 필요성은 아이돌봄서비스를 희망하나 이용하지 못해 민간 부문의 서비스 이용을 불가피하게 초래한 데서 비롯된다. 나아가 이는 앞서 민간 육아도우미의 주된 이용 사유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아동연령에 따라 차별화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영유아의 경우는 무상보육 실시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어려서 기관 이용을 원하지 않는 부모에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초등자녀의 경우는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을 경우라도 서비스 이용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한편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수요 규모는 영유아의 경우 기관보육의 미비점, 즉 어린이집 이용에도 불구하고 보육이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하지 못하는 점 등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으므로 종일제 보육의 내실화에 따른 수요 감소 등

7) 여성가족부(2019), 2019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p. 15.

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민간 육아도우미를 병행하여 이용하는 사유로는 어린이집의 실제 운영시간이 주요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들 중 보육이 필요한 시간만큼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종일제 보육의 정착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보육에의 기피 현상으로 가정내 시간제돌봄에 대한 수요가 별도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아이돌봄서비스의 불만족한 사항으로는 아이돌보미의 불친절, 전문성 부족, 긴 대기시간, 그리고 이용시간 제약 등이 지적되므로 아이돌봄서비스의 만족도 제고, 즉 대기 문제 해소, 아이돌보미 역량 강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면, 민간 육아도우미 수요는 근본적으로 믿을 수 있는 종일제 보육과 아이돌봄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점차 해소되어야 하나, 현재는 이에 대한 보장이 미흡한 수준에서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이들에 대한 자격관리가 시급하게 요구된다.

나. 자격관리 방안

앞서 언급한 민간 육아도우미 자격관리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문의 개입은 아동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의 확대와 상충되므로 신중한 접근을 요한다.

민간 육아도우미는 범죄경력 등 신원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신분증 등만 확인하고 채용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신원보장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육아도우미의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은 아동학대 발생

등 아동보호 차원의 우려를 내포하므로 우선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음의 두 가지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첫 번째는 국가에서 민간 육아도우미의 신원조회를 담당하는 기관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현행법상 성범죄와 아동학대 전력 등의 확인이 가능한 기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돌봄기관에 한정되며, 이들 기관에서는 경찰서를 통해 해당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2013년부터 외국인 육아도우미에 한하여 신분 확인을 위해 한국이민재단에 위탁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경우는 이들을 고용한 민간업체를 신원확인 의뢰 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으므로 국가의 범죄경력 조회 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해당 업무를 담당할 기관을 별도로 신설하거나 기존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현행 「아이돌봄 지원법」에 민간 육아도우미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두 번째는 직업소개업체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특정 요건을 갖춘 소개업체를 인증하여 해당업체에 한하여 신원확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등록된 육아도우미의 범죄경력 이외에도 현행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의거한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정신질환자 등)를 동시에 적용하여 육아도우미를 등록하는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을 지닌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인증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업체의 범죄경력 조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들 업체의 정보를 구축하여 상시 관리하는 기관에 대한 규정도 요구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직업소개업체 인증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으로 지정할만하다. 즉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교육체계를 구축하여 해당 교육을 위한 강사풀과 교육장소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현행 아이돌봄지원사업의 개편 방안과 민간 육아도우미

자격관리와의 연계 차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다시 말해 무상보육 하에서 아이돌봄지원사업의 확장은 한계를 지니므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서 제외되는 가구는 믿을 수 있는 민간 육아도우미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